##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81 발의연월일: 2024. 7. 24.

발 의 자:이상휘・박성민・박충권

김정재 · 김상욱 · 박성훈

권영세 · 박상웅 · 최은석

김장겸 • 배준영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(宣揚)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가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하여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,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,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의 진료 등 예우를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

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2(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예우) ① 국가는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
  - 1. 국내에서 교육 시 수업료, 입학금, 그 밖의 학비 및 장학금의 지급
  - 2. 국내에서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
  - 3.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
  - 4. 국가의 의료시설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 병원(이하 "보훈병원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
  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제1항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후손의 범위 및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	정 안
1. 국내에 입학금, 학금의 2. 국내에 가점 부 3. 출입국 허가 우 4. 국가의 복지의료 른 보훈 이라 한 지방자는 진료 5. 그 밖에는 사항 ② 제1항에 수 있는	엔참전용사 및 그 후 에우) ① 국가는 유 나 및 그 후손에 대하 각 호에 따른 예우를 다. 서 교육 시 수업료, 그 밖의 학비 및 장 지급 서 취업 시 채용시험 여

# 령령으로 정한다.